

베트남의 중소기업지원법 제정 동향

임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호치민지사

I. 들어가며

베트남이 최근 몇 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동남아 지역 내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점치는 뉴스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베트남 내 기업 수 및 경제규모의 절대 다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⁰¹. 특히 베트남 경제는 다른 아세안(ASEAN)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저임금 저부가가치 조립제조업의 높은 비중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트남 정부를 포함한 아세안 각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이와 같은 산업구조를 벗어나 제조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은 2004년 “아세안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정책 청사진(ASEAN Policy Blueprint for SME Development)”이 발표된 후 2010년 및 2016년에 각각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 발표된 “아세안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전략적 실행계획(ASEAN Strategic Action Plan for SME Development)”등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담에서 4대 우선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Strengthening MSME's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Age)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⁰¹ 현재 베트남에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일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베트남 내 전체 기업의 97.6%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전체 고용인구의 51% 및 GDP의 45% 이상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Dr. Vu Tien Loc, “Business Environment for Vietnam’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4면, 2016,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이와 같이 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최초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근거법률인 ‘중소기업기본법(Law No. 04/2017/QH14)’이 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바(이하 이를 ‘본 법’이라고 한다), 아래에서는 본 법 시행 이전 기존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내용과 신규 제정된 본 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II. 베트남의 기존 중소기업 지원법제

베트남 국회 및 정부는 2000년대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령 및 규칙(이하 ‘법률문서’라 한다)을 제정하여 왔다. 다만 본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법률문서는 국회가 제정한 정식 법률이 아닌 정부나 수상, 국회, 각 부가 각 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결정, 의결 등의 형태로만 산재되어 존재하여 왔다⁰².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일반 원칙을 담은 최초의 법령은 2001년 처음 시행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2001년 11월 23일자 시행령⁰³(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SỐ 90/2001/NĐ-CP NGÀY 23 THÁNG 11 NĂM 2001 VỀ TRỢ GIÚP PHÁT TRIỂN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Decree No. 90/2001/ND-CP)’이다. 본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이 100억 동(한화 약 5억 원)을 넘지 않고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300명을 넘지 않는 사기업, 국가기업, 협동조합, 가족기업(hộ kinh doanh cá thể)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무를 설정한 후 그 실행 방안으로 재무부의 신용보증기관 설립, 지방 인민위원회 등의 (특히 토지 및 시장 확대와 관련된) 지원의무, 인적자원 개발 및 컨설팅, 정보 제공을 통한 지원, 계획투자부

⁰² 베트남의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비에트연방 법률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도 국회, 정부, 수상, 각부 장관 등이 발하는 법령(PHÁP LỆNH, Ordinance), 영(LỆNH, Order), 의결(NGHỊ QUYẾT, Resolution), 결정(QUYẾT ĐỊNH, Decision) 등이 법률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각 법률문서 간 위계질서는 해당 문서의 발급기관 간의 위계질서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Mai Hong Quy, “Introduction to Vietnamese Law(2nd Edition)”, Hong Duc Publishing House, 2016, 28-31면/ 계경문 외 3,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129면 이하 참조]

⁰³ 위 법률 문서의 베트남어 명칭은 NGHỊ ĐỊNH이며, 한자로는 議定에 해당한다. 다만 그 내용과 체계상의 지위를 고려하여 이를 ‘시행령’으로 해석하고, 영어로는 프랑스법 상 이에 상응하는 개념인 Decree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장관이 제정하는 법률 문서 중 베트남어 명칭이 THÔNG TƯ, 한자로는 通諮인 문서의 경우에도 ‘시행규칙’으로, 영어로는 Circular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도 편의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지칭한다.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직속 중소기업 발전국(Cục Phát triển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의 신설 등을 정하고 있었다.

위 시행령은 2009년 시행된 동일한 명칭의 시행령(Decree No. 56/2009/ND-CP)으로 대체되었는데, 2009년의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종류를 초소형 기업(Doanh nghiệp siêu nhỏ, Micro-enterprise), 소기업(doanh nghiệp nhỏ), 중견기업(doanh nghiệp vừa)으로 세분화하고 각 산업별(농수산업, 공업 및 건설업, 유통 및 서비스업)로 각기 다른 자본금과 상시 노동자 수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만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은 기존 시행령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는데, 기술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계획투자국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는 정도가 주요한 차이였다.

다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시행령은 구체적인 정책을 정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준, 중소기업 지원의 목적 및 원칙, 지원 분야 등 큰 틀을 정하는 데에 그치고, 세부적인 정책은 각 정부부처가 각자 별도로 제정한 각종 시행규칙, 결정, 의결 등에서 각각 사안 별로 규정하도록 하였다⁰⁴. 이와 같은 세부적인 하위 법률문서의 내용은 크게 세금, 회계, 신용 공여, 신용보증, 인적자원, 별도 기금 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분야별로 각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세금 관련

세금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주로 한시적인 법인세 납부 기간의 유예 또는 연장, 법인세의 일부 감면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정책은 대부분 수개월에서 1년에 불과한 매우 단기의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도록 시행되었는데, 그에 따라 매년 한시적인 지원 정책을 위해 다양한 시행령, 시행규칙, 결정, 의결이 반복적으로 제정되어야 했다⁰⁵.

이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되었던 법령을 예로 들면, 2012년 발효된 ‘기업과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세 정책에 관한 국회 의결(NGHỊ QUYẾT VỀ BAN HÀNH MỘT

⁰⁴ 위 시행령은 이후 제정된 각 시행규칙과 결정, 의결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는바, 실제로 2016년 이후 제정된 각 시행규칙, 결정 등에서는 모두 그 근거 중 하나로 동 시행령을 언급하고 있다.

⁰⁵ 2010년 이후만 보더라도 Decision No. 12/2010/QĐ-TTg, Circular No. 39/2010/TT-BTC, Decision No. 21/2011/QĐ-TTg, Circular No. 42/2012/TT-BTC, Decision No. 04/2012/QĐ-TTg, Circular No. 83/2012/TT-BTC 등 다양한 시행규칙, 결정이 발효되었다.

SỐ CHÍNH SÁCH THUẾ NHẪM THÁO GỠ KHÓ KHĂN CHO TỔ CHỨC VÀ CÁ NHÂN, Resolution No. 29/2012/QH13)'이 도박업, 부동산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한 2012년 법인세의 30% 감면을 규정하였고, 후속 시행령(Decree No. 60/2012/ND-CP)은 이에 근거하여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 구분, 기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바 있다.

2. 회계 관련

2006년 재무부 장관 결정(Decision No. 48/2006/QD-BTC)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회계기준의 도입을 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재무부 제정 시행규칙(Circular No. 138/2011/TT-BTC)이 발효되었으나, 2016년 새로운 시행규칙(Circular No. 133/2016/TT-BTC)이 제정되어 2017년 발효됨으로써 기존 시행규칙은 폐지되었다. 위 신규 시행규칙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중소기업은 이에 따라 간소화된 회계기준을 도입, 적용할 수 있다.

3. 신용공여 관련

2011년 수상 결정(Decision No. 03/2011/QD-TTg)은 베트남 개발은행에게 중소기업의 대출 관련 보증을 제공하도록 정하였고, 재무부 시행규칙(Circular No. 47/2014/TT-BTC)은 이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보증의 내용 및 수혜 대상의 선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수상 결정(Decision No. 1726/QD-TTg)은 금융시스템에 관한 정책 목표를 정하면서 2020년까지 전체 운영 중소기업의 50~60%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률문서 또한 꾸준히 제정되어 왔는데⁰⁶, 2013년 수상 결정(Decision No. 58/2013/QD-TTg)은 각 직할시 및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고 그 자본금은 지방 정부의 예산 및 금융기관, 기업, 각종 단체의 기여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하였고, 재무부 제정

⁰⁶ 2000년 이후 제정되었다가 현재 효력을 잃은 관련 시행규칙, 결정으로는 Decision no. 193/2001/QD-TTg, Circular No. 01/2006/TT-NHNN, Circular No. 93/2004/TT-BTC이 있다.

2014년 시행규칙(Circular No. 147/2014/TT-BTC)은 위 결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조직, 운영방침, 회계, 감사 등의 세칙을 정하였다.

4. 인적자원 관련

계획투자부/재무부 제정 2014년도 시행규칙(Joint Circular No. 04/2014/TTLT-BKHDT-BTC)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조직,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내 조직, 기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5. 중소기업 발전기금 관련

2013년 수상 결정(Decision No. 601/QD-TTg)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 출자의 발전기금 운영재단을 구성할 것을 정하였다. 이에 따른 2014년 재무부장관 결정(Decision No. 1339/QD-BKHDT)에서는 해당 재단의 정관을 상세화하였고, 이후 해당 기금의 재정적 운영 지침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No. 119/2015/TT-BTC), 우선 지원 대상의 상세 선발기준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No. 13/2015/TT-BKHDT),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이자율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No. 37/2016/TT-BTC)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결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 기금은 베트남 개발은행 또는 다른 상업은행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데, 대출금의 상한은 대출 대상 기업의 전체 투자자본금의 70% 및 300억 베트남 동(한화 약 1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출기한은 최장 7년(계획투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장 10년), 이자율은 일반 상업은행 이율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부가 정하는 바 현재에는 1년 이하 단기 대출의 경우 연 5.5%, 장기 대출의 경우 연 7%이다.

Ⅲ. 2018년 발효된 베트남 중소기업지원법의 내용

1. 들어가며

본 법의 베트남어 정식 명칭은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이며, 2017년 6월 12일 제14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본 법은 제4장 제3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별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장 일반규정

(적용범위 및 객체,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인정기준, 기본원칙 등)

제2장 중소기업 지원의 내용

제1절 일반적 지원방안

(신용공여, 신용보증기관, 조세 및 회계, 생산, 기술, 시장확대 등)

제2절 가족기업의 전환, 스타트업 지원,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클러스터 및 밸류체인 지원

제3장 중소기업 지원의 의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 기타 관계 단체의 의무)

제4장 부칙

2. 본 법의 의의 및 원칙, 중소기업의 정의

본 법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의 원칙, 내용, 근거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정부기관, 단체, 개인의 책임을 정하는 데에 있다(제1조).

또한 본 법은 ① 중소기업 지원이 베트남의 시장 정책과 베트남이 체결한 조약에 부합할 것, ② 중소기업 지원의 내용, 대상, 절차, 근거, 지원의 정도와 결과가 투명할 것,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제한된 기간 동안 지원의 목표와 균형 잡힌 자원 능력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 ④ 비정부단체와 개인의 자원에 기초한 중소기업 지원은 각자의 내부 규정과 법률 규정에 부합할 것, 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여러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장 유리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여성이 소유한 중소기업 및 보다 많은 여성 근로자를 채용한 중

소기업이 우선권을 가질 것, ⑥ 중소기업이 본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필히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등의 중소기업 지원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제4조)

본 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định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에는 ①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한 평균 채용인원이 200명 이하이며, ② 총 자본금이 1천억 베트남 동(한화 약 50억 원) 이하, ③ 전년도 이익이 3천억 베트남 동(한화 약 150억 원) 이하인 ④ 농업, 임업, 수산업, 공업 및 건설, 무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초소형 기업(*Doanh nghiệp siêu nhỏ, Micro-enterprise*), 소기업(*doanh nghiệp nhỏ*), 중견기업(*doanh nghiệp vừa*)이 포함된다.

3. 중소기업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1) 신용공여 관련 지원

본 법은 신용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 및 대출 실행 촉진 등을 장려하는 정책의 도입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본 법은 또한 같은 조에서 그와 같은 정책의 구체적인 예를 기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를 맡을 신용평가기관(*tổ chức tư vấn độc lập để xếp hạng tín nhiệm*)의 설립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전담할 신용보증기관(*Quỹ bảo lãnh tín dụng*)의 설립이다.

한편 본 법 제9조에서는 신용보증기관의 설립 근거 및 임무에 대해서 대략적이거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즉, 동 조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신용보증기관은 각 성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기관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자산, 경영계획, 신용평가등급에 근거하여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본 법 상 위와 같은 신용보증기관은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다만 본 법은 그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부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제9조 제4항), 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신용보증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2013년 수상 결정(Decision No. 58/2013/QĐ-TTg) 및 재무부 제정 2014년 시행규칙(Circular No. 147/2014/TT-BTC)이 본 법 제정 전에 발효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결국 본 법에서 신

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 또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본 법에서는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을 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설립 방법 및 그 임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은 본 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제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 감면 및 회계기준의 적용

본 법은 중소기업에 통상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⁰⁷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또한 본 법에서는 조세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초소형 기업에 대하여 간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본 법에서는 구체적인 감면 세율을 특정하거나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바, 결국 해당 조항의 내용 또한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정해질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및 간이 회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⁰⁸.

(3) 생산, 기술, 시장 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의 지원

본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생산, 기술, 시장 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 각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생산 및 기술연구, 시장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의무를 국가 및 각 지방정부에 부과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토지의 임대 및 할당, 토지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인하 및 면제, 공동 업무 공간 및 기술 협력, 유통망 직접 설립 또는 이를 위한 민관합작 협력체 설립, 무료 또는 온라인 인력교육 프로그램 제공, 법률 및 각종 정보에 관한 온라인 웹사이트의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⁰⁷ 2018년 3월 기준 베트남의 법인세율은 20%이다.

⁰⁸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발효된 시행규칙(Circular No. 133/2016/TT-BTC)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미 간이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4) 가족기업의 중소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본 법 제16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 등록을 위한 각종 비용의 면제, 법인세 및 토지사용료/임대료의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5) 스타트업(Start-up)에 대한 지원

본 법에서는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지 5년 이내의,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은 스타트업(Start-up)에 관하여 기업과 투자자 양 측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이전 절차의 지원, 장비 사용,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정하고 있고,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형태와 요건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정부자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본 법에서는 스타트업의 정의를 ‘지적재산권 및 기술,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 제2항) 이와 같은 정의는 매우 불분명하므로, 실제 지원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과 스타트업의 구체적인 구별 기준이 포함된 추가 하위 법령이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시사점 및 향후 검토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상당수가 이미 기존 법률문서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이미 시행되었다가 종료되던 정책인바, 실제 본 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가족기업의 중소기업 전환 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등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어 후속 시행령 등 하위 법률문서의 제정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법은 베트남 내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근거가 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 본 법의 제정에 의하여 기존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각종 중소기업 지원법제는 통일된 근거 법률을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본 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법률의 명령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의 설정 및 추진이 강제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본 법의 제정은 베트남 국회 및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처럼 본 법의 제정이 가지는 법률적, 정책적 의의는 과소평가되기 어렵다.

특히 본 법에서는 토지사용권 관련 지원 내용 등 일부 규정 외에는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y)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에 소재한 국내 투자자 소유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본 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하위 법률문서의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 나갈지 여부는 국내 투자자 및 투자기업의 입장에서도 주목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계경문 외 3,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박번순 외 1, “아세안의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산업연구원, 2013. 12.

Mai Hong Quy, “Introduction to Vietnamese Law(2nd Edition)”, Hong Duc Publishing House, 2016

Vu Tien Loc, “Business Environment for Vietnam’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6